

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 모집공고

□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추진목적

- 체계화된 품질 인증기준 적용을 통한 업계 서비스 개선 유도
- 관광접점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

□ 모집인원 : 관광부문 전문가 〇〇명

□ 신청자격 : 관광관련 분야에서 다음중 하나의 경력을 보유한 자

- 관광관련 분야 : 관광, 관광경영, 호텔관광, 호텔외식, 문화관광, 관광레저, 조리외식, 관광경제, 마케팅, 소비자 등

분 야	자격기준
관광 전문가	①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관련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
	② 관광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관광관련업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
	③ 관광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	④ 관광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로서 관광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	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광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	⑥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 양성교육 수료 후 품질인증심사에 참여하였거나,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평가위원 교육 수료 후 등급 평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(공고일 기준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평가위원 제외) 또는 관광관련 분야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
	⑦ 그 밖에 제 1~6까지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

* 상기 자격기준을 포함, 지원자 이력서 상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이 확인된 경력만 서류전형에 위한 경력으로 인정

- 위의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며 다음 사항 이행이 가능한 자
 - 금년도 11~12월 양성과정 전 일정 참여 및 이후 3년간* 평가요원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자 ※ 평가단 선발 및 운영일정(다음페이지) 참고
 - * 위촉기간(2021.12.10.~2024.12.9./3년)동안 평가업무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, 평가일정 배정 시 평가요원의 가능일정을 고려하여 배정 예정
 -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, 불시·암행평가, 특별심사*를 진행할 수 있는 자

- * 현장평가: 서류평가를 통과한 업소 대상으로 평가일을 미리 업소에 고지하고 실시하는 1차 현장평가
- * 불시평가: 사전 고지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요원의 신분을 밝히고 평가하는 방식(신규 심사 시, 1차 현장평가를 통과한 숙박업소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현장평가 및 갱신심사가 이에 해당됨)
- * 암행평가: 사전 고지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요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평가하는 방식(쇼핑업 평가의 경우 2차 현장평가를 암행+불시평가로 진행함)
- * 특별심사: 인증사업자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사(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에 의거 실시)

제12조(특별심사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.

1. 인증사업자가 인증 당시의 필수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<개정 2021.1.8>
2. 인증기간 중 시설의 개·보수 등이 있어 인증 받은 시설·면적·서비스에 변동이 있는 경우
3. <삭제 2021.1.8>
4. 인증사업자가 인증 유효기간 중 제5조제4항에 따라 등급상향을 신청을 하는 경우
5. 사업장 이전 등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<개정 2020.4.21/2021.1.8>

※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<https://koreaquality.visitkorea.or.kr>) 참조

- 위촉기간 중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평가위원 지원 및 활동계획이 없는 자 (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 및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평가위원 겸임 불가)

○ 지원 제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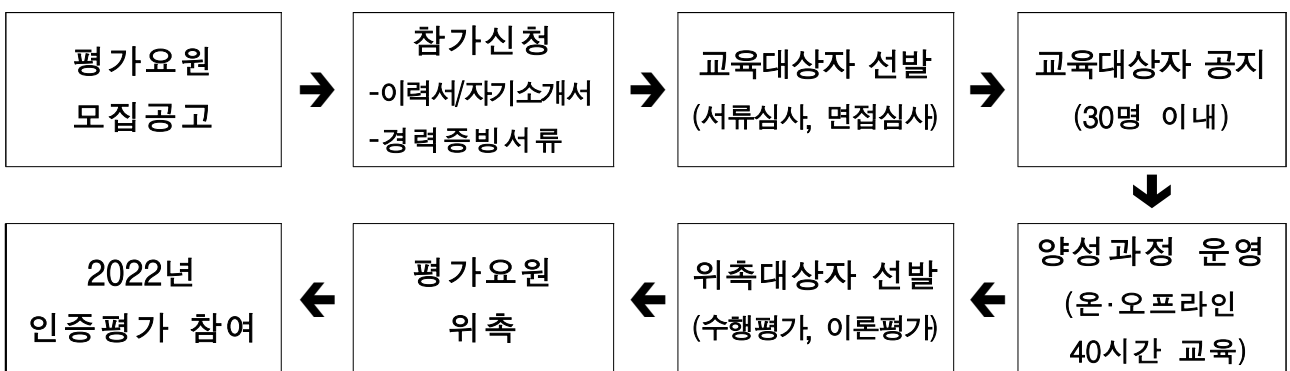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<개정 2010. 3. 22., 2013. 8. 6., 2015. 12. 24., 2018. 10. 16., 2021. 1. 12.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□ 공모절차



□ 위촉기준

- 평가요원 교육대상 선발 ⇒ 양성교육 이수 ⇒ 선발기준 통과

□ 평가단 선발 및 운영일정(안)

- 9.15(수)~10.12(화)* 평가요원 모집공고 및 접수
 - * 2021.10.12.(화) 14:00 접수 분까지 인정
- 10.13(수)~11.9(화) 서류/면접전형 및 양성과정 참가대상자 통보(11.9예정)
- 11.10(수)~12.2(목) 평가요원 양성과정 운영 (참석 필수)
 - 양성과정 운영계획(안)

구 분	온라인교육 (8H)	오프라인교육 (32H, 4일 과정)
운영기간	11.10(수)~11.16(화)	· 이론교육 : 11.16(화)~19(금) (11.16~17/18~19, 2개조 분리 실시) · 현장실습 : 11.29(월)~12.2(목) (11.29~30/12.1~2, 2개조 분리 실시)
교육내용	관광 및 인증심사 관련 소양교육	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이론·현장실습 교육 및 평가

- 양성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시행 예정임
- 온라인교육은 가급적 오프라인교육 참가 전 필수 수강 완료 요망
- 교육과정 중 교육수행평가(수행평가, 이론평가) 후 합격자 최종선발
 - * 교육 미이수(80% 미만 참석) 또는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평가요원 위촉 불가 (각 부문별 35점 미만(50점 만점 기준) 과락, 한 부문이라도 35점 미만 시 위촉불가)
 - * 교육 불성실 참여자의 경우 최종 위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* 교육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
- 12.10 최종합격자 발표/평가요원 위촉
- 12월~ 한국관광 품질인증 인증심사 시행
 - 심사지역 : 전국
 - 심사대상 :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업(일반·생활),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, 한옥체험업, 관광면세업(사후면세) 등

□ 지원방법

- 신청기간 : 9.15(수)~10.12(화) 14:00까지

-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(qualhr@knto.or.kr / 지정양식 작성 후 제출)
- 제출서류
 - 지원자 이력서(인적사항*, 최종학력 및 관광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)
 - * 인적사항의 경우,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본인확인 목적으로 수집
 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
 - *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 경력증명서류 원본을 스캔한 PDF, JPG 등 파일 형태로 제출
 - 자기소개서 (하단 자필서명 필수)
 - 개인정보 수집/이용 동의서 (하단 자필서명 필수)
- 유의사항
 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/이용 동의서의 경우 제공양식 미준수 시 평가 제외
 - 지원서 기재내용은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해 인정
 -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 위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합격 이후에도 평가요원 자격 취소
 - 정보입력 오류, 증빙자료 미첨부 및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
□ 평가요원 선발기준

구분	선발방법	평가내용
1차	서류/면접전형	관련 경력, 지원동기 및 경력의 적합성 등 평가요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자질 여부
2차	교육수행평가	평가요원 양성과정 중 수행평가 (출석, 관찰, 필기, 실습 등 종합평가)

□ 위촉기간 및 수당 등

- 평가요원 위촉기간 : 2021.12.10. ~ 2024.12.9. (3년)
 - 위촉기간 중 활동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평가요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 해촉 가능
- 심사수당 등 :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무규정 및 전문평가단 운영기준에 따름

□ 문 의 처 :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 심사운영사무국
(02-6925-3992 / qualhr@knto.or.kr)